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75
----------	-----

제출연월일 : 1999. 6.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98. 1.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지금까지는 청구인의 범위 중 청구인의 주거지를 관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함
(안 제5조).
- 나. 공개대상 행정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의견을 정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 다.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이의신청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위원회의 공개가부 심의결정기간을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3항).
-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과 보임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던 것을 폐지함(안 제12조제4항)
- 마.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중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에 대한 자문”을 “행정정보의 공개가능여부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목록 작성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폐지함(안 제13조제2호 및 제17조).
- 바.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신설).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9조제3항, 제3조, 제16조, 제10조제1항및제2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2조제2항, 제12조제5항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

○ 예고기간: 1999. 5. 28~1999. 6. 16

○ 예고결과: 의견없음

참고사항 : 경기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 (별첨)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증 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나 사무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중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중 "심의·의결하거나"를 "심의하거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개가능여부 심의 및 자문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 목록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 (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는 집행기관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u>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2.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p>제5조 (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
<p>제10조 (공개의 거부결정) (1)~(4) (생략) 〈신설〉</p>	<p>제10조 (공개의 거부결정) (1)~(4) (현행과 같음) (5)집행기관은 공개대상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p>
<p>제11조 (이의신청) (1)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집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생략) (3)제 2항의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심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의 가부를 심의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생략)</p>	<p>제11조 (이의신청) (1) 30일 이내..... (2) (현행과 같음) (3) 7일 이내..... (4)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위원회의 구성등) (1)~(3) (생략) (4)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12조 (위원회의 구성등) (1)~(3) (현행과 같음) (4)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u>심의·의결</u>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공개대상 행정정보 목록에 대한 자문 3.~4. (생략) <p>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 ①집행기관은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영 상황을 일반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p> <p>〈산선〉</p>	<p>제13조 (위원회의 기능)..... <u>심의</u>하거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공개가능여부 <u>심의</u> 및 자문 3.~4. (현행과 같음) <p>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 ①집행기관은 공개대상 목록책자를 발간하여 본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을 준용한다.</p>